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21 |
|----------|-----|

제출년월일 : 2006. 3. 20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과 건축연면적 10,000m²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미술장식품 의무설치 조항을 지자체에 위임한 바 이의 구체적 적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대한 규정(안 제2조)
- 나.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결정(안 제5조)
 -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1,000분의 1이상
 -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 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평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안 제6조)
- 마. 위원회의 기능, 임기, 회의 등 규정 (안 제7조 내지 제12조)
- 바.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입법예고 : 2006. 1. 27 ~ 2. 18 실시결과, 의견제출 없음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통신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평창군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 받은 경우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필증을 교부한다.

제4조(미술장식 설치확인)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 및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1,0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평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지역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의 건축물과의 조화
4. 미술장식의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 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②위원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대상인 미술장식의 제작에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의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계획 심의를 받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4조의2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